

방송 통신 법률 상식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긴장관계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규모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문의 : ☎ 02-390-4515)

요즈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케이블 TV나 IPTV 등을 보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즐겨보던 채널이 사라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채널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방송채널의 변경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매해 방송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콘텐츠 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들이 플랫폼 사업자(IPTV 사업자나 케이블 TV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SO : System Operator)와 프로그램 공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채널의 시청자 유치에 공헌도를 평가하여, 시청자 유치의 공헌도가 낮은 채널은 편성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지만 소위 마니아 층이 있는 채널의 경우에는 상위 계층의 상품에 편입되기도 한다. 예컨대, 기본형 40채널의 케이블 상품과 70채널의 케이블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 마니아 계층이 많은 채널을 더 비싼 70채널 짜리 상품에 편입시키면 당해 채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싼 케이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채널편성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채널대역수가 매우 많은 IPTV나 디지털 케이블 TV보다는 아무래도 채널 수가 한정되어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TV에서 많이 발생한다. 생각해보면, 채널이 보통 900번 대까지 있는 IPTV의 경우에는 채널 편성의 문제가 좀 더 좋은 번호를 받는 것이 되지만, 채널이 한정되어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의 경우에는 채널편성의 문제는 당해 PP의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매우 절박한 문제가 된다. 시장에 놓고 비유를 하자면 비록 구석진 자리에서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과 아예 장사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일부 SO가 PP들이 공급하는 채널의 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는 송출 중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PP가 공급하는 일부 채널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어느 날부터 갑자기 SO가 채널 송출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100번 대에서 볼 수 있는 채널들을 갑자기 900번 대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사실 IPTV를 보시는 분이더라도 보통 900번 대의 프로그램까지 찾아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무단채널 변경은 사실상 송출 중단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송출

중단 행위는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 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보면 마치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은 것이 결국 시청자들이 어느 플랫폼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그 플랫폼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 특히 시청률이 높은 다수의 채널을 운용하는 MPP(Multi Program Provider)는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특정 Killing Contents가 존재할 경우 이러한 MPP들은 항상 인기가 덜한 자사의 다른 채널을 끼워팔기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긴장관계는 법에 의하여 어떻게 규율되고 있을까? 2012년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는 (i) SO가 PP에게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중단, 제한하는 행위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포함)와 (ii) PP가 SO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중단, 제한하는 행위 (역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포함)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물론 (iii)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의 재미있는 점은 MSO와 MPP 사이에 수신료 배분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계약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이 어렵게 되는 경우 과연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적용할 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MSO가 무리한 조건을 주장하여 MPP가 그 조건으로는 방송을 할 수 없으니 해당 MSO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과연 책임은 무리한 조건을 주장한 MSO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한 MPP에게 있는 것인가?

한편, IPTV법 상의 금지행위는 방송법과는 약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즉, IPTV 법 제17조 제1항은 금지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PP의 프로그램 공급중단이나 IPTV 사업자의 채널편성 변경이나 채널제공 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다만, IPTV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PP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법 제85조의2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 지연, 제한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PTV 법은 IPTV 사업자가 PP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 즉 갑(甲)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규모 면에서 보았을 때, 통신 거대기업들과 MSO는 차이가 나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 역시 시장에서 대체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PTV서비스와 케이블 TV 간의 일종의 비대칭적 규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